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
----------	----

제출연월일 : 2011. 11. 1.

제 출 자 : 이정율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조정

(안 제2조제2항)

나. 서류 미 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기준 마련(안 제17조)

-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선서 또는 증언 거부 : 100만원 이하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7일”을 “9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선서 또는 증언 거부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이나 서류 미 제출 또는 선서 및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u></p> <p>제2(감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 ⑤ (생략)</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u>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u></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9일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u>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4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